

의안번호	2205202
의 퇴 인	김상욱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21.
추 계 번호	24F4785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지역자원시설세의 폐기물 과세대상 추가 －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지역자원시설세에 폐기물을 과세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는 2025년 1,601억원, 2029년 1,601억원,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8,005억원(연평균 1,601억원)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역자원시설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폐기물 과세대상 추가 (안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, 제143조제2호라목 및 제146조제2항제4호 신설)	1,601	1,601	1,601	1,601	1,601	8,005	1,60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폐기물 과세대상 추가 (안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, 제143조제2호라목 및 제146조제2항제4호 신설)	○ 폐기물 매립 및 소각 처리 - 과세대상: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 시설에 반입 처리하는 폐기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- 납세의무자: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- 세율: 1만원/톤당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폐기물 과세대상 추가	○	

	(안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, 제143조제2호라목 및 제146조제2항제4호 신설)		
--	--	--	-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4년 국회에서 심의·의결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폐기물은 현행 매립 및 소각되는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로 가정
 - 사업장폐기물에는 사업장비(非배)출, 사업장배출, 건설폐기물, 사업장지정폐기물, 의료폐기물 등 포함
- 향후 매립 및 소각 폐기물량은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매립 및 소각 폐기량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 폐기물량(매립 771만톤, 소각 830만톤) 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개요

- (제도개요)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시설분의 과세대상은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등이 있음
 - 개정안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추가

[표 2]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과세표준 및 세율

과세대상		과세표준 및 세율
현행	컨테이너	컨테이너 티이유(TEU)당 1만 5천원
	원자력발전	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원
	화력발전	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6원
개정안	폐기물	폐기물 매립량 및 소각량 톤당 1만원

나. 추계방법 및 결과

□ (추계방법) 매립 및 소각 폐기물을 추정 한 후 세율(1만원/톤당)을 적용하여 세수추계

- 향후 연간 매립 폐기물량은 2020~2022년 매립실적의 연평균(771톤)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, 여기에 세율(1만원/톤)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은 2025년 771억원 등 향후 5년간 3,855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

[표 3] 최근 3년간 매립 폐기물량: 2020~2022년

(단위:만톤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연평균
생활폐기물	242	248	211	234
사업장폐기물	568	571	474	538
합 계	811	819	685	771

주: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량은 공공처리 및 위탁(민간)처리의 합계
자료: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환경통계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4] 향후 5년간 폐기물 매립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추계

(단위 : 만톤,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폐기물 매립량 (A)	771	771	771	771	771	—
세율(B)	1만원/톤	1만원/톤	1만원/톤	1만원/톤	1만원/톤	—
추정세액 (=A×B)	771	771	771	771	771	3,855

자료 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소각 폐기물량은 2020~2022년 소각실적의 연평균(830톤)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, 여기에 세율(1만원/톤)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은 2025년 830억원 등 향후 5년간 4,148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

[표 5] 최근 3년간 소각 폐기물량: 2020~2022년

(단위:만톤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연평균
생활폐기물	506	501	494	500
사업장폐기물	342	319	326	329
합 계	848	820	821	830

주: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량은 공공처리 및 위탁(민간)처리의 합계
 자료: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환경통계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6] 향후 5년간 폐기물 소각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추계

(단위 : 만톤,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폐기물 소각량 (A)	830	830	830	830	830	—
세율(B)	1만원/톤	1만원/톤	1만원/톤	1만원/톤	1만원/톤	—
추정세액 (=A×B)	830	830	830	830	830	4,148

자료 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추계결과) 지역자원시설세에 폐기물을 과세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는 2025년 1,601억원, 2029년 1,601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8,005억원(연평균 1,601억원)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역자원시설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매립 폐기물 세액	771	771	771	771	771	3,855	771
소각 폐기물 세액	830	830	830	830	830	4,148	830
합 계	1,601	1,601	1,601	1,601	1,601	8,005	1,601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